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무조정실에 신기술·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1명)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으로 대체함

다. 합 의 : 국무조정실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2. ~ 8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3항 전단 중 “34명”을 “36명”으로, “4급 또는 5급 12명, 5급 20명”을 “4급 또는 5급 13명, 5급 21명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289”를 “29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86”을 “288”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6”을 “17”로,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30”을 “31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89”를 “29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86”을 “288”로 하며,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“16”을 “17”로, 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“30”

을 “31”로 한다.

별표 4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3호를 제2호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생략) ③ 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<u>34명(4급 2명, 4급 또는 5급 12명, 5급 20명)</u> 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.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	제20조(국무조정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36명</u> ----- <u>4급 또는 5급 13명, 5급 21명</u>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제25조(한시정원) ① (생략) ② 삭제 ③ <u>신기술·신산업 등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무조정실에 두며, 별표 4의 정원 중 1명(4급 또는 5급 1명)은 기획재정부, 1명(5급 1명)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. 이 경우 국무조</u>	제25조(한시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

<u>정실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</u> 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---	-------------------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1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89</u>	<u>291</u>	+2
·	·	·	
일반직 계	<u>286</u>	<u>288</u>	+2
·	·	·	
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16</u>	<u>17</u>	+1
·	·	·	

행정사무관 · 사회복지사 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농 업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환 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 신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· ·	<u>30</u> ·	<u>31</u> ·	+1
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

[별표 1의2]

국무조정실 공무원 정원표(제20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289</u>	<u>291</u>	+2
·	·	·	
일반직 계	<u>286</u>	<u>288</u>	+2
·	·	·	
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	<u>16</u>	<u>17</u>	+1
·	·	·	
행정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공업사무관·농업사무관·보건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	<u>30</u>	<u>31</u>	+1
·	·	·	

	.		.		.	
--	---	--	---	--	-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09